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

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7. 9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1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적용대상(안 제3조)

○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(안 제4조)

○ 수급인의 책무(안 제5조)

○ 임금 등의 지급상황 확인(안 제6조)

○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(안 제7조)

○ 임금 등의 직접지급(안 제8조)

○ 신고센터 설치 등(안 제9조)

○ 자료 제출(안 제10조)

○ 계약특수조건 반영(안 제11조)

○ 체불사업주 조치 등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하여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
○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,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,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,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정하였음.

○ 안 제4조에서는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음.

○ 안 제5조에서는 노동(근로)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과 표준 약관 사용, 임금지불 약정서 제출,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와 지급 내역서 제출 등 수급인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, 안 제6조에서는 공사감독자와 계약담당부서에서 임금 등의 지급상황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였음.

○ 안 제7조에서는 발주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대가 지급 전 까지 노동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, 안 제8조에서는 발주자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와 직접 지급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정하였음.

○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,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안 제11조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하였고, 안 제12조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과 발주자의 체불임금 해소 노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, 안 제13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○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용역에 있어 노동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